

『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여성친화도시 근거법령 및 지침에 맞춘 조례 현행화 필요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근거한 성격·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체계 구축

3. 주요내용

- 법제명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
 - 「여성발전기본법」→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변경 (안 제1조)
 -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→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변경 (안 제2조)
 - ‘성별영향분석평가’→‘성별영향평가’로 용어 변경 (안 제2조, 안 제11조)
-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명칭 변경 (안 제19조~제22조)
 - ‘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’을 ‘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’으로 변경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시민의 요구와 개입을 확산시키고 지역 여성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 강화

- 양성평등위원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 수행 (안 제24조)
 -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역할을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유사기능의 위원회 단일화
-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관련 조항 신설 (안 제26조)
 -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에 필요한 사업 발굴, 컨설팅, 평가 등의 역할을 추진하는 기구에 관한 규정 신설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성별영향평가법」,
「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 -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근거한 유사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안임.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법제명 변경에 따라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,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을 「성별영향평가법」으로 제명을 변경하고, ‘성별영향분석평가’를 ‘성별영향평가’로 용어를 정비하였음.
- ‘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’을 ‘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여성 친화적인 지역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책형성에 시민 참여의 의미를 강화하였음.
-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위원회를 단일화하고,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에 필요한 사업 발굴, 컨설팅, 평가 등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, 양성평등 관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